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8월26일 임현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
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체육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
조항 신설 (안6조)

4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은,
-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
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

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
이견이 없음.

붙임 : 1.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